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1 ~ 3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10. 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개정이유

- 문화복지센터 기구·인력 보강 승인에 따른 정원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

주요골자

- 기구폐지 및 설치
 - 폐 지 :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
 - 설 치 : 거창군문화복지센터

※종합사회복지관 및 박물관을 문화복지센터로 통합
- 정원승인 : 4명 (5급 1, 7급 2, 9급 1)

개정근거

- 신규사업·시설에 대한 기구·인력보강 승인
: 경상남도 행정 12200 ~ 11622 (2001. 9. 14)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“541명”을 “545명”으로 하고, 총계란 정원 “551명”을 “555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41명</u></p> <p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0명</p> <p> 총계 : <u>551명</u></p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545명</u></p> <p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0명</p> <p> 총계 : <u>555명</u></p>